##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．발 의 자 ：교육의원 전응천

2．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O 발의일자：2011년 9월 9일
O 회부일자 ：2011년 9월 15일

## 3．제안이유

○ 보조금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＂기관카드 사용 의무화， 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，이의신청＂등의 조문 신설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－보완하고，
○ 법제처의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．

## 4．주요내용

가．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에는 기관카드 사용을 명문화하고，교부 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（안 제8조의 2 ）
나．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（안 제18조의2）
다．법제처의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

## 5．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．9．22．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＂기관카드 사 용 의무화，보조금의 별도계정괸리，이의신청＂등의 조문을 신설하고，

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•보완 및 법제처의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전체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.
$\bigcirc$ 안 제 8 조의 2 를 신설하여 제 1 항의 "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기관카드 사용 의무화" 하도록 한 것은 현행 금융거래에 서 법인이든 비법인 단체 등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 성되어 있고,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법렁에 따라 <표 1>과 같이 부패영 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 사항의 사례와 <표 2>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보조 금이 지원되고 있어 이에 따른 투명성이 강조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적정한 개정이라 생각되며,
< 표 $1>$
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-1189(2009.8.3)
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• 규칙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 권고

| 과제명/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조치사항 |
| :---: | :--- | :--- |
| 오조금 사용 시 기관카드 사용 의무화 |  |  |
| - 보조금 집행 시 기관카드 사용을 의무 | 보조금 집행 | 조례개정 |
| 화하고, | 투명화 |  |
| - 정산 시 에는 증빙서(영수증 발급 등)을 |  |  |
| 제출토록 규정 |  |  |

<표 2>
충청북도교육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
(단위:천 원)

| 년 도 | 지원단체수 | 지원금액 | 집행액 | 비 고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2008 | 163 | $1,757,555$ | $1,729,217$ |  |
| 2009 | 114 | $1,681,449$ | $1,665,733$ |  |
| 2010 | 88 | $2,039,609$ | $1,946,194$ |  |

※ 참고 : 충청북도교육청의 '08~09년 행정사무감사, ' 10 년 결산검사 자료

제2항의 "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"하도록 한 것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 회계연도 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에서 '상당수 보조사업이 별도 계정을 설정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을 감안해 볼 때 적정한 개정이라 생각됨.

O 안 제 18 조의 2 에 "이의신청"을 신설한 것은 민주시민 사회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바, 보조금의 교부 결정, 교부결정의 취소, 보조금의 반환 명령 등 교육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조사업자가 교육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,

○ 그 밖에 안 제14조 "보조사업의 실적보고" 조문의 자구 정비와 법제처의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전체 조문을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용어, 문장, 띄어쓰기 둥을 정비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.

## 관 계 법 령 발 췌

## $\square$ 지방 재정 법[시행 2011. 9. 9][법률 제10439호, 2011. 3. 8, 일부개정]

제 17 조(기부•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) (1)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•보조•출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3.8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(2) 제1항 단서에 따른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 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1.3.8>
5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6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(3)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,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 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. <신설 2011.3.8>
$\square$ 지방재정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3121호, 2011. 9. 6, 일부개정]

제 29 조(기부•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) (1) 삭제 <2011.9.6>
(2)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그 밖의 공금 지출"이라 함은 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 출을 말한다. <개정 2011.9.6>
(3) 법 제 17 조제 1 항제 4 호에서 "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"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

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츨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(4) 삭제 <2011.9.6>
(5) 법 제 1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,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[제목개정 2011.9.6]

## $\square$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8조(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) (1) 위원회는 법률 • 대통령령 • 총리령 • 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 • 예규•고시•공고와 조례•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• 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 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(2)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$\square$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0조 (부패유발요인의 검토) (1)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률•대통령 령•총리령•부렁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•예규•고시•공고와 조례•규칙(이하 "법령등"이라 한다)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•검토(이하 "부패영향평가" 라 한다)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.

1. 부패유발의 가능성

가.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
나.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.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
2. 법령 등 준수의 용이성

가. 국민•기업•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

나. 법령등의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
다.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•타당성 여부
3. 행정절차의 투명성

가.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 되는지 여부
나. 준비사항•처리절차•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
4.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
(2)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, 평가기준,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칸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(3)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.
(4) 위원회는 법 제28조제 1 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.
(5)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 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(6)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•개정하고자 하는 법 령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웅하여야 하고,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 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.
(7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•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 1 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.
(8)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

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(9) 법 제 2 조제 1 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둥 내부규 정(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)에 대한 부패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 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